

項、第六十條、第六十二條第三項及四項、第六十三條乃至第七十五條、第七十八條乃至第八十一條、第八十二條第五項及第八十四條乃至第八十七條規定은 抗告審判에 此를 準用함

但 第六十四條乃至第六十六條及第七十五條에 當事者 또는 參加人 이 라 함은 特許異議申立人 또는 第六十三條規定에 依한 訂正許可에 對한 異議申立人을 包含함

第九十三條 不合法한 抗告審判의 請求로써 其欠缺을 補正할 수 없는 境遇에 是 被請求人 에게 答辯書提出의 機會을 주지 않고 抗告審判의 審決을 서지 此를 却下함

第九十四條 抗告審判의 請求는 其 審理 終結까지 此를 取下할 수 있음

第九十五條 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는 其 審理 終結까지 此를 拋棄할 수 있음

抗告審判을 請求한 後 前項의 權利를 拋棄할 時는 其 抗告審判의 請求를 取下된 것으로 看做함

第九十六條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原審判 請求의 理由는 原異議申立의 理由를 變更할 수不得함

追加理由는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考慮할 수不得함 抗告審判에 是 其 審決에 必要한 原審에서 過失이 可證한 是 提出한 手続의 是 境遇以外는 新證據의 調查는 하지 않음

但 特許異議申立을 主張하는 追加理由 또는 新證據에 關하여는 此를 適用하지 않음 抗告審判所는 決定으로 追加理由의 考慮의 可否 또는 新證據에 關한 許否의 判斷을 함 此 決定에 對해서는 不服의 申立을 不得함

抗告審判所는 申立은 是 職權으로 追加理由의 考慮 또는 新證據에 關한 決定을 함

第九十七條 審査 또는 審判에서 行한 手続은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其 效力이 有함

第九十八條 抗告審判은 抗告審判 請求人 이 抗告審判 請求書中에서 指摘한 事項에 對하여 審査官 또는 審判官의 過誤의 有無을 判斷함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左記事項에 關하여는 當事者、參加人 또는 異議申立人 이 申立하지 않거나 또는 取下하지 마라 是 審理을 할 수 있음

一、 審査 또는 審判의 手續의 合理與否、二、 特許가 不當하다는 請求 또는 特許無效의 理由의 有無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前項에 依한 審理을 行할 時는 其 理由에 對하여 當事者、參加人 또는 異議申立人 에게 指定한 範圍을 定하여 陳述의 機會을 賦與하여야 함

第九十九條 抗告審判은 當事者、參加人 또는 異議申立人 이 履行 規則에 依하여 局長이 傳達할 수 있는 그 可證한 再審을 利用하지 못함 是 是 二의 理由를 由로 事件의 根據을 變更하는 二의 理由에 對한 再審은 此를 拒絕할 수不得함

第二百條 抗告審判의 審決은 審査官의 拒絕査定 또는 査定 또는 審決을 確認、變更 또는 破毀함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審査官의 拒絕査定 또는 原審의 審決을 變更 또는 破毀한 境遇에 是 事件에 關하여 審決하기 나 또는 記錄上 其 事件의 最後處分을 할 수 없는 時는 其 事件을 審査官 또는 原審判所에 差戻할 수 있음

但 第六十三條規定에 依한 審判의 審決이 破毀 또는 變更된 時는 其 事件은 第六十八條第二項、第三項及第四項에 依한 手續을 하기爲하여 原審에 差戻함이 可함

抗告審判에서 審査官의 拒絕査定 또는 審判官의 決定 또는 審決을 破毀할 時는 前項에 依하여 其 事件을 差戻함이 可함

是 時는 其 破毀의 理由는 事件에 對하여 審査官 또는 原審判所를 對象함

前項規定이 適用되지 않을 時는 抗告審判 請求人 또는 其他 被害者는 抗告審判을 納付하지 않음 抗告審判을 다시 請求할 수 있음

第二百一條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審査官의 拒絕査定 또는 原審判所의 決定 또는 審決의 理由가 是 理由로 特許出願의 請求를 拒絕할 時는 審判官은 第六十七條規定에 依하여 出願者 또는 特許權者에 對하여 是 通知하여야 함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抗告審判의 審決은 出願者 또는 特許權者가 其 請求에 關하여 抗告審判所에 再考를 請求할 수 있는 範圍을 定하여야 하며 其 期間은 四十日以上이여야 함 但 第六十八條에 依한 抗告審判及 第六十三條에 依한 審判에 對한 抗告審判에 있어서는 出願者 또는 特許權者에 對하여 前項及 前項을 訂正한 特許證을 주지 않음

第二百二條 抗告審判의 審決이 原審判의 拒絕査定 또는 破毀할 時는 審査官은 第八十一條規定에 依하여 手續을 進行하여야 함 但 既往 出願公告가 有할 時는 다시 出願公告를 하지 않음 許與하지 못함

第二百三條 抗告審判의 審決이 不服한 者는 審決이 法令에 違反한 理由로 是 是 境遇에 限하여 審決의 廢止를 請求할 수 있음 但 第六十九條規定에 依한 抗告及 第六十九條三條規定에 依한 抗告는 抗告審判이 却下할 時에 此를 適用함

前項規定에 依한 上告及其 裁決에 關하여는 別段의 規定이 無한 限 民衆訴訟의 上告及其 裁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一項에 依한 上告狀은 大法院에 提出하며 此를 特許局에 通知하여야 함

前項審決에는理由를附하여야함
事件이審決함에完結할時는審判長은審理에終結을
當事者及參加人에게通知하여야함
審判長은必要에따라前規定에依하여審理의終結을
通知한後라도申立에依하여 또는職權으로再審理를
再開할수있음

審決審判의終結通知日부터二十日以内에此를行하
여야함 審決은確定되자前에申立에依하여 또는職
權으로再其審決을更正할수있음

第百八十條 第百條의審判에있어서는補償金額에關
하여도亦是此를審決함

第百八十一條 審判에關하여는差違差類及差違에關한
規定은特許局施行規則에依하여此를規定하여야함
特許權者는特許權에利害關係가有한者가國內에
住所는居所有한지안는時는第五十四條乃至第
五十六條에規定한代理人의住所는居所은財産에
所在地로看做함 但代理人이無한時는特許局의所
在地를民事訴訟法第八條에規定한財産의所在地로
看做함

第百八十二條 第百二十三條規定에依한審判에있어
서審判長은第百二十四條에依한審査官의意見書의
謄本을特許權者에게送達하여答辯書를提出하는請
求를訂正期間을指定하여야함 但訂正의許可를
拒絕할理由가明白치않을時는此를適用치않음
審理中第百二十三條에依한訂正의許可를拒絕할理
由가無한境遇에는公告의決定을하여야함

第七十四條、第七十五條第一項、第二項及第四項
第七十六條第一項乃至第五項及第七十七條規定은
前項에依한公告의決定에準用함 但審判所는審査
官이遂行하도록規定한行爲를遂行하여야하며도第
七十四條第一項第一號規定에依하여特許審決の日

字를公告하여야함
規定한期間內에異議申立이無한時 또는異議에依하
여審理가決定된時는審判所는許可의與否를審決하
여야하며境遇에따라서는制限을附할수있음
第百七十二條、第百七十三條及第百七十八條의規
定은第百二十三條에依한審判에는此를適用치아니함
第百八十三條 特許或은第百二十三條의訂正의許可
의效力은特許權의範圍에關한確定審決 또는判決
外有한時는同一事實은同一證據에基하여同一審
判을請求함을不得함

第百八十四條 審判에있어서必要할時는民事 또는刑
事訴訟이完決될때까지其審判手續을中止할수있음
民事 또는刑事訴訟에關하여必要할時는裁判所特許
審決이確定될때까지其手續을中止할수있음

第百八十五條 審判에關한費用의負擔은本法는法
令으로別段의規定이없는限審決로서此를定함 其
費用의金額은審決로서此를定할수있음

第百八十六條 審判에있어서는費用을要하는行爲에
對하여其費用의負擔을命할수있음

第百八十七條 審判에關한費用의決定及本法에規
定한補償金額에關한確定決定及審判은強制執行에
關하여는民事訴訟法第五百五十九條第一項規定
에依한債務名義로看做함 但其執行力이有한正本
은特許局官吏此를賦與함

第十二章 抗告審判

第百八十八條 特許出願者 또는再發行特許出願者는
左에該當한境遇에審査官의拒絕決定에對하여審判

課에抗告審判을請求할수있음
一、請求가再次拒絕決定된時
二、出願에對하여最後의拒絕決定이있을時
第七十六條의決定을包含한審査官의拒絕決定에對
한抗告審判의當事者는一方으로되
第一項規定에對한抗告審判은審査官의拒絕決定日
부터六月以内에提出하여야함

抗告審判當事者의一方이一抗告審判料을納付하
면同一出願의當事者一方인抗告審判에있어서는再
次其料金額을要치않음

第百八十九條 査定는審判의審決을受한者不服의
有한時는其陳本의送達을受한日로부터算하여其
審判課에抗告審判을請求할수있음 但即時抗告는
法에規定된時에限하여其決定을受한日로부터四日以
內에하여야함 但第百八十九條規定에依한補償金額
에關한決定은審決或은第百八十五條第一項規定
에依한費用에關한決定은審決에는此를適用치않
음 第百五十九條規定에依한即時抗告及第百五十
三條規定에依한審決에對한抗告審決은當事者가一
方이며其他抗告審判은當事者가雙方일수
있음

第百九十條 前二條規定에依한抗告審判은規定한料
金과抗告審判請求書를特許局에提出하여請求하여
야함
抗告審判請求書는其理由를記載하여審査官은審判
官의過誤를指摘하여야함
第百九十一條 第百八十八條及第百八十九條規定에
依한抗告審判의手續은審判課抗告審判所에對하여
此를行함 抗告審判所는局長이指定한三人은五人
의審判官으로構成하여合議는過半數에依하여此
를決定함

第百九十二條 第百五十九條第一項、第二項及第三

特許法(法令 第92號)

(改正 續紀 4285年 4月 13日)
法律 第238號

이 資料는 古本과 舊官報에서 複製하여 原型대로 掲載하므로 페이지의 順序가 거꾸로 되었음을 밝히면서 錯誤없기 바랍.

100전

이음을 不知할 時 또는 其後에 獲在할 時는 本項을 適用
치 않음

第百六十七條 第百六十五條、第百六十六條에 依한

除斥 또는 忌避의 申立은 書面으로 此를 行하여 야 함

但 口頭審理할 時는 口頭로서 此를 行할 수 있음

除斥 또는 忌避의 原因은 申立한 日로부터 三日以內에 此
를 說明하여 야 함 本條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陳述
한 後 第百六十六條第二項에 依하여 忌避의 申立이 있
는 境遇에 此를 適用함

第百六十八條 除斥 또는 忌避의 申立이 有할 時는 審判

에 依하여 此를 決定함

審判官은 自己 自身의 除斥 또는 忌避에 關한 審判에 는
干與할 수 不得함 但 審判官은 意見을 陳述할 수 있음

第一項에 依한 決定에 는 理由를 添付하여 야 함

第一項에 依한 決定에 는 不服 申立을 不得함

第百六十九條 除斥 또는 忌避의 申立이 期한 時는 其申

立에 對한 決定이 有할 時까지 審判手續을 停止함 但

急遽를 要하는 行爲에 對하여는 此를 適用치 않음

第百七十條 審判은 實面審理에 依함 但 審判長이 適

當하다 且 認定할 時는 申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서

口頭審理에 依할 수 있음

口頭審理는 此를 公開함 但 公益 또는 風俗을 害할 恐

慮가 有할 時는 此를 適用치 않음

第百七十一條 審判에 있어서 通事를 使用할 수 있음

通事의 使用에 關한 民事訴訟法의 規定은 此를 本法의

審判에 適用함

第百七十二條 利害關係人은 審理가 終結되기 前에는

其 審判에 參加할 수 있음

第百七十三條 參加의 申請은 參加理由를 闡明한 後 參加

申請書를 提出하여 此를 行함

審判長은 參加申請을 受理할 時는 其 副本을 當事者及
參加人에게 送達하여 答辯書提出의 期間을 指定하여
야 함

參加의 與否는 審判에 依하여 決定함

第百六十八條第三項及 第四項規定은 前項에 依한 決

定에 此를 適用함

第百七十四條 審判에 있어서 는 申立에 依하여 또는 職

權으로서 證據調査를 行할 수 있음

前項의 證據調査는 所要事務를 取扱하는 地方法院或

는 證據調査地城을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事務를 行하

는 其他官廳에 此를 囑託할 수 있음

民事訴訟法中 證據調査에 關한 規定은 前項規定에 依

한 證據調査에 此를 適用함 但 審判官은 過料을 賦課

하지 거나 拘引을 命하지 거나 또는 假證을 宣誓하게 할 수 不

得함

第百七十五條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法定或은 指定 期

間內에 手續을 終了하거나 또는 期日에 出頭하지 않을 時

審判長은 其 審判을 進行할 수 있음

第百七十六條 審判의 請求는 其 審理의 終結前에는 何

時라도 此를 取下할 수 있음 但 答辯書提出以後에 取

下하는 境遇에 는 被請求人의 承諾을 要함

第百七十七條 審判에 있어서 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申立하지 않는 理由 또는 取下한 理由에 對하여 또는 此를 充

分히 審査할 수 있음 但 此 境遇에 있어서 는 指定한 期

間內에 其 理由에 關한 意見을 申立의 機會를 주어 야 함

第百七十八條 審判官은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兩

一한 二以上 審判에 對하여 其 審判官은 審判의 終結을

할 수 있음 審判官은 前項規定에 依하여 併合된 審判

의 審理 또는 審決을 다시 分離할 수 있음

第百七十九條 審判은 別段의 規定이 無한 限 審決로서

此를 終了함